



원산지 표시 방법

1. 원산지 표시제

어린이의 건강·안전 및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쇠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국내산의 경우 한우, 젓소, 육우 구분 표시	 돼지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닭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오리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양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염소고기 (유산양 포함,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쌀(밥, 죽, 누룽지) (찰쌀, 현미, 찐쌀, 쌀가공품 포함)	 배추김치 (배추, 고춧가루) (배추김치 가공품, 얼갈이 배추, 봄동배추 포함)	 콩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가공품 포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전복, 가리비, 방어, 부세, 멍게(우렁쉥이)		

3. 원산지 표시 방법

- 식당이나 취식 장소에 일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풋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육·보육 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적힌 주간·일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교육·보육 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함
 - 축산물의 경우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
 - 거래명세서 등의 범위 :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영수증, 원산지 증명서, 도축검사 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포장재 표시사항 등



- 글자 크기**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표시
- 표시 위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모든 음식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 혼합 표시**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 미표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고춧가루, 콩,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원산지의 표시 방법 위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미비치	20만원	40만원	80만원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관리원]